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80
----------	------

2021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강동길·여명 의원 (찬성의원 11명)
- 나. 제 안 일 : 2021년 10월 14일
- 다. 회 부 일 : 2021년 10월 20일
- 라. 상 정 일 :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1월 2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강동길 의원)

가. 제안이유

- 성인기에 사회로 이행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점차 고립되어 가는 고립청년들이 급증하고 그 연령대 또한 높아지고 있음.
-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고립청년은 기존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에서 소외되며 분절된 서비스 체제로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심리·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상당히 복합적으로 나타나기에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구축이 시급함.

- 이를 통해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고립청년 발굴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6조).
-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8조).
- 민간 전문가 활용 근거를 마련(안 제9조).
-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2021. 10. 25. ~ 11. 1.)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안은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성인기에 사회로 이행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점차 고립되어가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과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된 것임.
- 주요내용은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고립청년 발굴 방법, 지원 사업 내용,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근거 마련, 민간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등 임.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p>③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p>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p>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p>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p>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제6조 (고립청년 발굴)	<p>①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p> <p>② 시장은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제7조 (실태조사 등)	<p>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p>
제8조(지원사업)	<p>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p>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p>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p>
제9조 (민간전문가 활용)	<p>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제10조 (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p>① 시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제11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p>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p>
부칙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안 제2조제2항)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 실정을 반영하여, 고립청년의 사회유입을 위한 지원과 지역 기반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심리 지원·진로탐색·사회적 기술 등 정책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는 2019년(성북구 시범 사업)부터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고, 2021년에는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입법·제도상 체계적인 뒷받침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에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용어 정의와 사업의 목적·범위가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명확히 규정되어 사업 추진시 어려움이 없을지 여부 등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회적 고립청년 전국 현황〉

- '17년부터 구직단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에는 60만명 육박
 -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가능성이 있으나,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

〈출처: 국가통계포털(통계청)〉 (단위: 천명)

성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481	524	533	605
남자	287	305	304	348
여자	194	219	229	258

- '20.8월 기준 구직단념자(68만 2천명, 전년동월대비 25.7% 증가) 중 20대 비중이 36.6%(24만 9천명)로 최대이며, 20~30대의 구직단념자는 52.6%로써 노동시장 둔화로 인한 청년 고용위기의 위험이 확인됨 (*출처: '20.8월 고용동향)

- 구직 등 사회진입의 이행 경로를 벗어나는 저(低)활력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
 - 청년(15~29세) 대상 '미취업 기간 동안 주된 활동' 조사 결과, '그냥 시간 보냄(23.9%, 39만 7천명) 응답이 2번째 높은 비율 차지

〈출처: 2020.5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단위: 천명, %)

계	직업교육, 취업 준비	그냥 시간 보냄	구직활동	육아, 가사	그 외
1,660 (100.0)	630 (38.0)	397 (23.9)	236 (14.2)	158 (9.5)	239 (14.4)

- '쉬었음'(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않음) 인구 : 20대는 '19년 4/4분기부터 지속적 증가(이후 1년간 9.3만명 증가), 30대도 증가세(5만명 증가)

〈출처: 국가통계포털(통계청)〉 (단위: 천명)

연령대별	'19 3/4	'19 4/4	'20 1/4	'20 2/4	'20 3/4	'20 4/4
만20~29세	345	335	386	422	424	428
만30~39세	232	226	216	239	283	276

〈2021년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계획〉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만19~34세 고립·은둔 청년 400명 내외 지원
- 지원방법 : 민간단체 용역사업(공모)으로 시행 ▶ 2개 내외 용역
 (사업유형 ①) 저소득·구직단념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유형 ②) 은둔청년(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 2021. 03. ~ 12.
- 지원내용 :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개인상담 지원, 사회관계망 및 청년-가족 자조모임, 취미·체험 프로그램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의사소통 방법 등 사회적 적응 훈련 교육 등 지원

세부사업(안)

- ① 저소득·구직단념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각지대 고립 청년의 사회 유입을 위한 생활 근거지 기반 프로그램
 - 지역 기반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하여, 상시적 지원 서비스(활동 유도)
 - 자치구 등 권역(구역)별로 해당 지역 내 고립 청년들의 유형/에너지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 심리지원, 진로탐색, 사회적 기술, 자기이해 등

〈고립청년 대상 프로그램 예시〉

구분	프로그램	세부 내용(안)
관계기술	자기탐색프로그램	마음열기 및 자기탐색활동, 다시도전챌린지, 다시 시작하는 재도전 등
	관계형성프로그램	그림책 심리코칭 활동 등
	소그룹커뮤니티	동화일러스트를 주제로 한 자기계발 활동
진로탐색	자기계발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색채테라피, 신체균형진단 및 홈교정 트레이닝 실습 등
	진로재탐색프로그램	나의 일대기를 통한 적성 및 라이프스타일 발견 등
일 역량 강화	현직자멘토링	현직자 간담회, 인터뷰 및 질의응답
	취업기초교육	자기소개서, 면접 특강 및 1:1 첨삭 등
맞춤 지원	진로컨설팅	다중지능검사 실시
	사례관리,상담 등	개인 욕구 파악 및 자원연결, 정책연결

*출처 : 2020년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 사업

나. 세부 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안 제4조), 실태조사(안 제7조)

-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시장 등의 책무(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는 '청년'에 대한 정의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의 정의 규정과 같게 하여 조례상의 정의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 안 제2조제2호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정의를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 관련 상위법이 제정된 바 없어 법적 용어와 정의는 지금까지 정립되지 않은 실정임.
 - 한편,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둔형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통합안으로 발의되었는바, 동 용어와 정의 및 개념이 유사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05년 청소년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관련 연구를 하며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여인중 박사 연구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란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 3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음.
 - 또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연구(2005)에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 없이 3개월 이상 집 안에 머물고 있고, 진학·취업 등의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고 있으며,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자신의 은둔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끼는 청소년으로,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증도 이상의 정신지체(IQ 55~50)가 있을 경우 제외'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후 논문이나 학자들의 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술적 용어의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고 기간이 3개월, 6개월로 나뉘고 있음.(출처: '서울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길을 찾다' 토론회 자료집(p.21))

- 동 제정조례안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관련 사업 추진시 적용범위와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용어 및 개념에 대해 정부와 학계, 당사자, 부모, 심리상담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 안 제3조제3항은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 종료 후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청년고립의 특성상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립청년과 가족에 대해 가정 방문 및 고립청년 모니터링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사업 참여 전후로 유의미한 발전여부를 사후적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안 제7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안 제5조는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고립청년 지원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는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 정책과 추진방향,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자원 조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고립청년을 위한 지원계획도 다른 분야의 청년계획들과 균형과 조화 속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 「청년일자리기본계획」·「청년창업지원계획」 등과 중복·상충될 소지 여부, 다른 청년 관련 계획들과 수립시기 등을 연계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 역시 청년 정책 기본계획인 5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진행 중에 있음.

※ 기타 청년 관련 기본계획 수립 현황-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청년창업지원계획(1년),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5년), 청년주거기본계획(10년)

- 또한, 시장의 임기와 맞추어 4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근거〉

2021년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계획

초장기 고립·은둔형 청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사회진입 및 접촉을 촉진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확산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및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 2019~2020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청년자율예산)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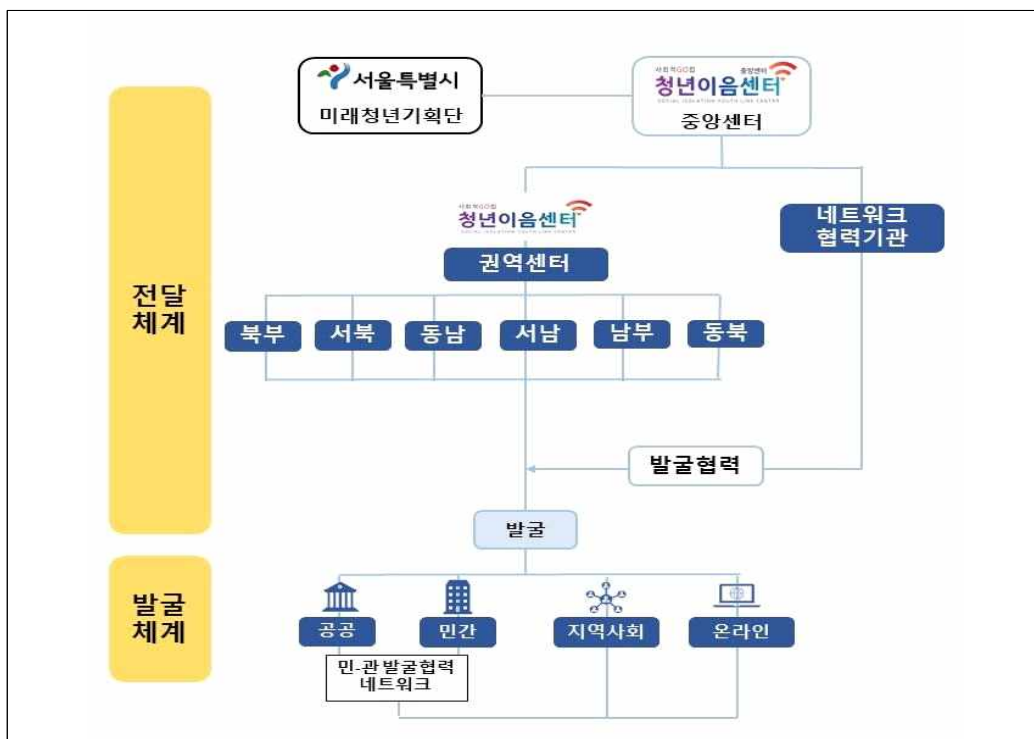
3) 고립청년 발굴(안 제6조)

- 안 제6조는 고립청년 발굴 주체를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명시하고 있음.
- 청년고립의 특성상 한 민간단체 또는 한 기관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현재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찾동), 1인가구지원센터, 청년공간 등과의 연계를 통해 권역별·지역별 관심과 관찰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제6조(고립청년 발굴)

- ①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 ② 시장은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1년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용역사업 서비스전달 및 발굴체계>



※ 출처: 2021년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용역사업 중간보고회(2021.9./미래청년기획단)

4) 지원사업(안 제8조)

- 안 제8조는 고립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제8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안 제8조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되는바,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동 사업 운영에 관한 경비사용에 어려움이 없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운영(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고립청년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제10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사업은 단순 정책 제공 업무와 다르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시 또는 자치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 보다, 위탁·용역 사업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한 동 조항 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한편, 고립청년을 발굴하고 안착할 수 있는 생활근거지 기반의 지역사회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역기반 조성권역센터별 특화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 권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서울청년센터 및 청년공간을 고립청년 지원 사업 연계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1년 서울 청년공간 운영 현황〉

※'21. 10월 기준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전용면적)	인력	'21예산 (백만원)	운영방법	개관	
1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은평구 통일로	2187㎡	34	3,468	서울시 민간위탁	'16.7.	
2	서울청년센터	관악 오랑	관악구 신림동	329㎡	6	535	자치구 민간위탁	'20.2.
3		금천 오랑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93㎡	6	595	서울시 민간위탁	'20.2.
4		강동 오랑	강동구 올림픽로	403㎡	6	535	자치구 민간위탁	'20.5.
5		은평 오랑	은평구 통일로	358㎡	6	535	자치구 민간위탁	'20.6.
6		동대문 오랑	동대문구 왕산로	481㎡	6	601	서울시 민간위탁	'20.10.
7		노원 오랑	노원구 상계동	297㎡	6	451	자치구 민간위탁	'20.11.
8		성동 오랑	성동구 왕십리로	341㎡	6	535	자치구 민간위탁	'20.11.
9		마포 오랑	마포구 월드컵로1길	271㎡	6	551	자치구 민간위탁	'20.12.
10		광진 오랑	광진구 능동로	385㎡	6	535	자치구 민간위탁	'21.2
11		서초 오랑	서초구 반포동	556㎡	6	303	서울시 민간위탁	'21.10

12	무 중 력 지 대	대방	동작구 등용로	446 m^2	4	441	민간위탁	'15.4.
13		양천	양천구 오목로	385 m^2	3	351	민간위탁	'18.2.
14		도봉	도봉구 마들로11길	440 m^2	3	351	민간위탁	'18.6.
15		성북	성북구 아리랑로	343 m^2	3	351	민간위탁	'18.6.
16		서대문	(홍제) 서대문구 통일로	316 m^2	5	441	민간위탁	'18.7.
			(무악재) 서대문구 통일로	133 m^2				
17		강남	강남구 개포로	133 m^2	3	351	민간위탁	'19.8.
18		영등포	영등포구 당산로	300 m^2	3	441	민간위탁 (자치구)	'19.8.
19	청년허브	은평구 통일로	1881 m^2	25	2,575	민간위탁	'13.4.	
20	청년교류공간	마포구 방울내로5길	313 m^2	3	441	민간위탁	'18.3.	

6)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고립청년의 발굴 및 사후적 모니터링 점검과 이를 통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유관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다만, 고립청년의 정책유입경로는 복지관·구청 사이트 검색, 홍보물, SNS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인 추천·기관 추천 등의 비자발적인 유입의 비율도 상당하므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미래청년기획단의 적극적인 홍보 지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2021년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용역사업 유입경로 현황분석〉

신청사유		빈도(건)	비율(%)
신청 (자발적)	공공·민간기관 홈페이지	143	33.6
	sns	55	12.9
	포스터, 지역신문 등 기타	86	20.2
	소계	284	66.8
발굴 (비자발적)	지인 및 기관추천	123	28.9
	의뢰/의뢰체계	18	4.2
	소계	141	33.1

※ 출처: 2021년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용역사업 중간보고회(2021.9./미래청년기획단)

- 결론적으로, 본 제정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고립청년의 발굴,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 제정안을 통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담당 부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정책협의를 함께 사업조정, 전문인력, 예산, 시설 등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정책 사각지대 위기에 있는 청년 가정의 발견에 따른 다양한 사업(긴급생계비지원,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심리지원, 자살 관련 문제 대응 센터 등)을 연계하여 고립으로 정책 및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며 연속성 있는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8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4일
발 의 자 : 강동길, 여 명 의원(2명)
찬 성 자 : 김정태, 김제리, 봉양순,
송재혁, 이광호, 이승미,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채인묵, 최 선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성인기에 사회로 이행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점차 고립되어 가는 고립청년들이 급증하고 그 연령대 또한 높아지고 있음.
-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고립청년은 기존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에서 소외되며 분절된 서비스 체제로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심리·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상당히 복합적으로 나타나기에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구축이 시급함.
- 이를 통해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다. 고립청년 발굴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6조).
- 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8조).

마. 민간 전문가 활용 근거를 마련(안 제9조).

바.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사.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립청년 발굴) ①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